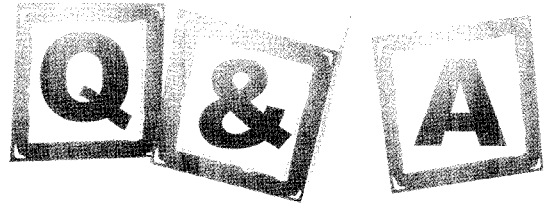


안전인증소식

Q &amp; A



## 전기용품안전인증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「자율안전확인제도」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

※ 주의 :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

〈편집자주〉

Q

안전인증을 받은 후 타사 부품 사용이 가능한가?

안전인증 신청시 wire 제조업체를 지정하여 인증을 받았는데, 안전인증 제품 생산시 KS, 안전인증을 인증 받은 동등 이상의 타사 wire를 사용해도 되는지?

A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0조(안전인증의 변경)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서상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하고,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

Q

일반 가정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ower Supply Cord 규격

일반 가정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ower Supply Cord 규격에 대해 220/250V 사용 기준으로 Cord 두께 0.75mm가 국제 규격인지와 최소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?

A

전원코드 규격은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기준(K 60227-5)과 국제기준(IEC)이 동일하게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0.75mm<sup>2</sup>, 절연체의 두께는 0.6m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

# Q

## 수중 집어등에 사용하는 전선의 안전인증대상 여부

당사에서 수입·판매하는 선박용 수중집어등 전선(VCT2 \* 8mm<sup>2</sup>, 경질염화비닐)이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인지? 동 전선은 어선 선박용 집어등을 밝힐 때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인장 강도나 내압, 침유성을 우수하게 하여 선박과 해수 속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.

※ 수중집어등용 전선은 수중집어등 장비들과 한 세트 구성되어 있어 상기 전선이여만 수중사용이 가능합니다.

# A

경질염화 비닐전선(VCT2 \* 8mm<sup>2</sup>, 경질염화비닐)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)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나, 동 제품이 수중케이בל로서 수중집어등 장비와 한 세트 구성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확인대상(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 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 되는 것)에 해당되니, 면제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(02-890-8300)로부터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.

# Q

## 노이즈 억제용 필터의 안전인증대상 여부

전도 노이즈 억제하는 필터로서 전원선 노이즈 억제용임. LC회로이며 L은 페이이트 비드로 구성하며 C는 1마이크로 용량으로 코먼모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음. 동 필터가 안전인증대상품목인지? 또한 대상 품목일 경우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

# A

노이즈 억제 필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)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 억제용 전원필터에 해당되며, 적용받은 안전기준은 K60939-1(간섭방지용필터), K60939-2(전자파장해 방지용 필터 소자)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
